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26. 1.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도·행정시·읍면동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 중 통합신청을 정례화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사업별 지침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목 차 ”

● 농축산식품 일반현황	1
● 2026년 지침변경 주요사항	2
●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7
●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17
●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23
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침	25
2.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사업 지침	34
3.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지침	45
4.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54
5.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 지침	63
6.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71
7. 시설 싹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	77
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81
I. 사업목적 · II. 지원근거 · III.사업개요	81
IV.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83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84
①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84
②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85
③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사업	85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86
⑤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87
⑥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89
VI. 사후관리	89
VII. 사업추진절차	92
 <별지>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관련 서식 제1호 ~ 제8호	

농축산식품 일반현황

○ 1차산업 조수입('24) ⇨ 5조 2,142억원(2023년 4조 9,749억원 대비 2,393억원(4.8%) 증가)



※ (농산물) 2023년 2조 2,586억원 대비 10.5% 증가 / (축산물) 2023년 1조 3,350억원 대비 4.0% 증가
(수산물) 2023년 1조 3,814억원 대비 3.7% 감소

◇ 산업구조('23^P)

- 1차 산업 10.2% (전국 1.6%)
- 2차 산업 11.5% (전국 34.7%)
- 3차 산업 78.3% (전국 63.7%)

○ 농 업('24)

- 농가·인구수 — 29,125가구 · 68,696명(도 전체 인구 698,358명의 9.8%)
- 농가 소득 — 60,247천원 * 부채 83,670천원
- 경지 면적 — 55,367ha(밭 55,355, 논 12)

※ 전국 경지면적 1,504,615ha(밭 743,603, 논 761,012)의 3.7%

○ 축 산 업('24)

- 사업체·종사자수 — 5,288호 · 15,853명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39, 젓소 4, 돼지 519, 닭 1,860, 말 15
- 초지 면적 — 15,435ha ※ 전국 초지면적 31,784ha의 48.6%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23)

- 업체 · 종사자수 — 1,071개 · 5,769명

※ 출처: 조수입(행정자료), 산업구조(통계청 「지역소득」), 농가수·농가인구수·농가소득(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지면적(통계청 「경지면적조사」), 사업체종사자수(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KOSIS·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산업소분류), 축산업: 행정자료), 초지면적(통계청 「초지관리실태조사」), 주요 가축(소·돼지·닭: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실태조사」)

2026년도 지침변경 주요사항

사업명	현 행	변 경												
친환경농업 육 성 사 업 통 합 지 원 <폐지>	1. 세부지원 사업: 5개 사업 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②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③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④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⑤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	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⑤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으로 개편(통합,신규) ②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③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④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사업’ 으로 개편(사업명 변경)												
친 환 경 농 산 물 인 증 농 가 경영안정지원 <통합,신규>	[신설]	<통·폐합> ○ 기존 5개 지원사업*→1개 사업으로 통합 지원 *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②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 ③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④ 친환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내용: 농자재(유기질비료, 녹비종자 등), 장비, 포장재 등 구입비 정액 지원 ○ 지원단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구분</th> <th style="font-size: small;">0.5ha이하</th> <th style="font-size: small;">0.5ha초과</th> <th style="font-size: small;">목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x-small;">유기</td> <td style="font-size: x-small;">130만원</td> <td style="font-size: x-small;">260만원/ha</td> <td style="font-size: x-small;">130만원/ha</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무농약</td> <td style="font-size: x-small;">104만원</td> <td style="font-size: x-small;">208만원/ha</td> <td style="font-size: x-small;">104만원/ha</td> </tr> </tbody> </table>	구분	0.5ha이하	0.5ha초과	목초	유기	130만원	260만원/ha	130만원/ha	무농약	104만원	208만원/ha	104만원/ha
구분	0.5ha이하	0.5ha초과	목초											
유기	130만원	260만원/ha	130만원/ha											
무농약	104만원	208만원/ha	104만원/ha											
친환경농업 인 증 지 원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 ○ (기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 (변경)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사업내용 변경> 3개 사업 ○ (기존) 5개 사업 → (변경) 3개 사업 - ①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비, ②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③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명	현행	변경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 비료 지원사업	<p>I. 사업개요</p> <p>4. 사업계획</p> <p>○ 지원대상 품목: 당근, 감자</p> <p>※ 대상품목은 사업 추진 중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p>	<p>I. 사업개요</p> <p>4. 사업계획</p> <p>○ 지원대상 품목: 당근, 감자</p> <p>※ 대상품목은 사업 추진 중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u>뿌리작물에 한하여</u> 추가·변경될 수 있음.</p> <p>→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원품목 범위 명확화</p>
G A 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p>II.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p>○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자</p> <p>○ GAP인증 받은 자</p>	<p>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p>○ <삭제></p> <p>○ GAP인증 받은 자</p> <p>→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신청</p>
고온성 미생물 지원사업	[신설]	<p>II. 사업 추진요령</p> <p>3. 농가별 사업량 배정기준 <신설></p> <p>○ 친환경 인증 면적 및 GAP 인증 면적 신청물량 우선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친환경 인증 면적 - 2순위 GAP 인증 면적 - 3순위 일반 재배면적 <p>→ 친환경 및 GAP 인증 면적에 대한 사업량 우선배정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촉진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 효과 극대화</p>

사업명	현 행	변 경
친서민 농정시책	II. 지원근거 ○ [신설]	II.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III.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정의 ① 소농 경지면적 0.5ha(5,000㎡) 이하 (과수 포함) ※ 경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기준으로 함	III.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정의 ① 소농: 경지면적 0.5ha(5,000㎡) 이하 (과수 포함) ※ 경지면적이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의 실제 경작면적(재배면적=실제 관리 농지면적)으로 함
	IV.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설]	IV.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발작물(채소·화훼·특용·식량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발작물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6개 사업 적용)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 공사추진 준수사항 ※ 사업완료 후 신축 (건축물)저온저장고 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가설건축물 불인정)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 건축 인허가 대상 건축물(신규·증축 등)인 경우 사전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후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후 신축 (건축물) 저온저장고는 건물 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가설건축물 불인정) 및 부기등기 의무화 -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기 및 부기등기 완료된 건축물 등기부등본 첨부 제출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⑥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 지원항목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설치비 제외)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⑥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 지원항목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설치비 제외) * 자재 구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기간 1년)

사업명	현행	변경						
친서민 농정시책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평가항목) - 수혜실적이 전혀 없는 신청자 배점 <1,2 그룹> 25점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1,2 그룹> 30점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평가항목) - 농업관련 교육이수 항목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평가항목) - GAP인증 농가 교육이수 2시간 기본 인정 <table border="1" data-bbox="911 792 1428 1037"> <tr> <td rowspan="2">⑤ 농업관련 교육이수</td> <td>① 2일(16시간) 이상 또는 농 업관련전문과 정 * 이수자</td> <td>10</td> <td rowspan="2">증빙자료확 인 *GAP인증 농가 : 이수증 없이 2시간기본 인정</td> </tr> <tr> <td>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td> <td>5</td> </tr> </table>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① 2일(16시간) 이상 또는 농 업관련전문과 정 * 이수자	10	증빙자료확 인 *GAP인증 농가 : 이수증 없이 2시간기본 인정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5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① 2일(16시간) 이상 또는 농 업관련전문과 정 * 이수자		10	증빙자료확 인 *GAP인증 농가 : 이수증 없이 2시간기본 인정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5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2그룹 가점부여 ○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2그룹 가점부여 ○ 발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농가 가점 부여(배점 3점) *전년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후 수혜농가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2그룹 가점부여 ○ 자조금 가점 배점 3점(경작지 암반제거,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한함)	【별지 제2호 및 제3호】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2그룹 가점부여 ○ - 자조금 가점 배점 5점(6개 모든 사업 적용)						
	VII.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VII.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임차농의 경우 농지대장						
【별지 제2호 및 제3호】 ① 농업관련 교육이수(5개년) (2021.1~2025.12.)	【별지 제2호 및 제3호】 ① 농업관련 교육이수(3개년) (2023.1~2025.12.)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기간 정례화로 농업인증심 사업 추진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도·행정시·읍면동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매년 1월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매년 1월중
 - 집중홍보기간: '26. 1. 2. ~ 1. 16.
 - 신청기간: '26. 1. 2. ~ 1. 16.
- ※ 단,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계획에 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 대상: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13개 사업 *19페이지 통합신청 사업목록 참조
 - * 도 7, 친서민농정시책 6
- 통합사업 신청서: 붙임 2 *일부사업 신청서 따로 정함

□ 역할분담

- (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추진계획 확정·통보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 (읍·면·동)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홍보
- (농가)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붙임 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계획 시달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계획 시달('25. 12월)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행정시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발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붙임 목록 검토 및 추가발굴 송부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제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송부 - 도 시행사업: 소관부서 확정 통보 - 행정시 공동시행사업 → 도 소관부서 총괄조정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송부 :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통보: 도 → 행정시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제작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26 1. 2. ~ 1. 16.)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6. 2월 ■ 사업예산규모 확정: '26. 2월말 ■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2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행정시·읍·면·동 → 대상농가('26. 3월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읍·면·동·행정시·도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2 신청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홍보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홍보비	500 63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단체 소개서

[단체명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6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 			
2025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6 주요사업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총 13개 사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규>	2,600,000 (정액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1,014ha · 지원내용: 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 - 소규모농가(0.1~0.5ha) 정액, 그 외 농가 면적별 지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2
②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지원	548,000 (정액지원)	친환경-GAP 인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3개 사업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 및 GAP 인증비 지원 · 지원기준 - 친환경 안전성검사비:200천원/건 - 친환경 인증비: 350천원/건, GAP 인증비 180천원/건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4982
③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90,000 (정액지원)	당근, 감자 재배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45,000포 · 지원내용: 감자, 당근 재배농가 칼슘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2,000원/포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④ GAP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00,000 (정액지원)	GAP 인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300,000포 · 지원내용: 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기준: 4천원/포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⑤ 고온성미생물 지원사업	1,000,000 (정액지원)	고온성미생물 공급 희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47,059세트 · 지원내용: GCM 미생물 약제 지원 · 지원기준: 21,250원/세트(2봉) 	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63
⑥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112,500 (보조80%)	농업인, 농업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32,140매 내외 · 지원내용: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산업과 710-3143
⑦ 시설 찜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8,000 (정액)	시설 찜채소류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지역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45톤 · 지원내용: 시설 찜채소류 육지부 도매시장 항공 출하 시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항공물류비 360원/kg(항공출하 물류비 600원/kg의 60%정액) 	식품산업과 710-3184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	
⑧ 농경지(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사업	90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214개소 (제주시 179, 서귀포시 35) 사업비: 900백만원 (제주시 750 서귀포시 150) 지원내용: 경작지내 암반 제거비용 지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지원단가: 35천원/㎡ 	<p>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p> <p>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p>
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813,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334대 (제주시 215, 서귀포시 119) 사업비: 1,813백만원 (제주시 1,500, 서귀포시 313) 지원내용: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1기종 1대 사업비 지원기준: 대당 10백만원 이하 	<p>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p> <p>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p>
⑩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18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18개소 (제주시 15, 서귀포시 3) 사업비 180백만원 (제주시 150, 서귀포시 30) 지원내용: 165㎡ 이하 육묘장시설비 지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60천원/개소 - 지원단가 84,000/㎡ 	<p>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p> <p>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p>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⑪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24개소 (제주시 20, 서귀포시 4) 사업비 300백만원 (제주시 250, 서귀포시 50) 지원내용: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기준 (시설) 17,325천원(보조 12,127) (장비) 13,200천원(보조 9,240)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
⑫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710,000 (보조70%)	밭작물을 재배 하거나 희망하는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9개소 (제주시 8, 서귀포시 1) 사업비 710백만원 (제주시 610, 서귀포시 100)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시설 - 빗물이용시설 지원기준(농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 1,650㎡ 이내 - 빗물이용시설 50톤 또는 100톤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 50천원/㎡ - 빗물이용시설 (50톤) 28,600천원 (100톤) 41,200천원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
⑬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 지원사업	14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55ha (제주시 27, 서귀포시 28) 사업비: 140백만원 (제주시 70, 서귀포시 70) 지원내용: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개소당 1ha 이하) 지원기준(한도): 3,750천원/개소 지원단가: 375원/㎡ 이하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064-710-3050
		팀 장 양행석	064-710-3161
		담당자 최미희	064-710-3162

I. 사업목적

-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 및 병충해 방제, 화학비료 사용 최소화로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인증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II.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I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26. 1 ~ 12월
- 총사업비: 2,600백만원(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대상 농자재 등 구입비 정액 지원
- 지급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각 면적 0.1ha ~ 3ha(시설재배는 330㎡ 이상)
- 지원단가
 - 소규모농가(0.1~0.5ha이하) 정액, 그 외 농가 면적별 지원(3ha 상한)

유기농산물 지원단가			무농약농산물 지원단가		
소규모(정액)	일반(/ha)	목초·이탈리안 그라스(/ha)	소규모(정액)	일반(/ha)	목초·이탈리안 그라스(/ha)
130만원	260만원/ha (㎡당 260원)	130만원/ha (㎡당 130원)	104만원	208만원/ha (㎡당 208원)	104만원/ha (㎡당 104원)

※ 단, 시설재배인 경우 인증면적 330㎡이상 지원,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단가' 적용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별 지급금액 산출방식>

◇ 친환경농산물 인증 합산면적이 0.5ha(5,000㎡) 초과한 경우

→ (유기면적 x 유기단가) + (무농약면적 x 무농약단가) + (목초면적 x 목초단가)

※ 단, 일부 유형별 인증면적 규모가 0.5ha 미만(소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면적별 단가 적용

예시① 유기 12,272㎡, 무농약 2,500㎡ ⇒ 합산면적 14,772㎡

☞ (지급액) 유기 3,190,720원(12,272㎡ x 260원) + 무농약 520,000원(2,500㎡ x 208원)
= 지급액 3,710,000원 ※ 천원 단위 절사 ▲ 무농약 소규모단가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예시② 유기 5,546㎡, 무농약 34,393㎡ ⇒ 합산면적 39,939㎡

☞ (지급액) 유기 1,441,960원(5,546㎡ x 260원) + 무농약 6,240,000원(30,000㎡ x 208원)
= 지급액 7,681,000원 ※ 천원 단위 절사

◇ 인증 합산면적이 0.5ha(5,000㎡) 이하인 경우

① 유기 면적 ≥ 무농약 면적 ⇒ 유기 소규모 지원단가 적용

② 유기 면적 < 무농약 면적 ⇒ 무농약 소규모 지원단가 적용

☞ (예시) 유기농산물 1,980㎡, 무농약농산물 2,500㎡ ⇒ 합산면적 4,480㎡
= 지급액 1,040,000원(무농약 소규모 지원단가)

IV. 지원대상자 요건 및 사업비 집행 기준

1. 지원대상자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인증면적 노지재배 1,000㎡ 이상, 시설재배 330㎡ 이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 사업비 집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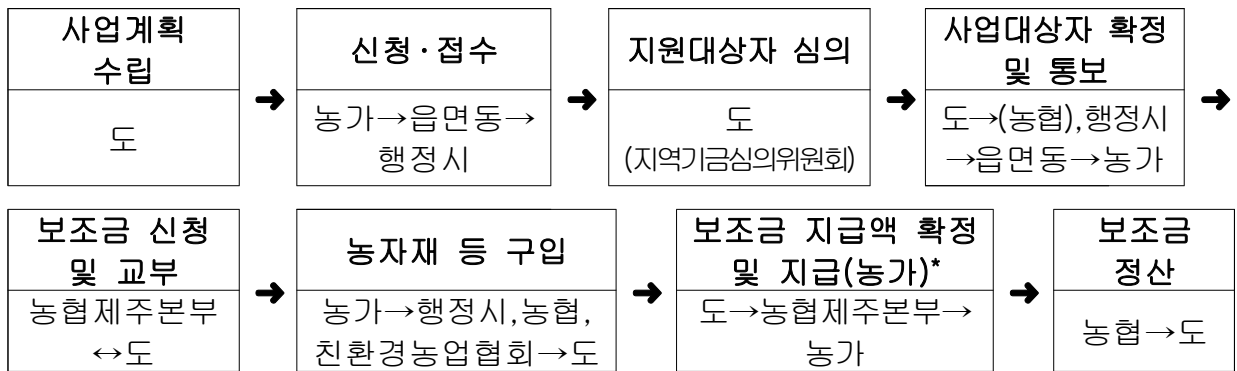
- 구입기간: 대상자 확정 후 ~ '26. 10. 31.
- 구입가능 항목: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장비 등 지원

분야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비고
농자재	▶ 유기질비료, 퇴비, 친환경방제 등 유기농업자재 ▶ 생분해성 비닐, 녹비종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일반업체 공동구매의 경우 제주도친환경농업 협회가 주관한 경우만 인정
장비	▶ 해충 포획기, 예초기, 멀칭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45만원 미만의 농작업용 소모성 장비	
포장재	▶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공동구매)

V. 사업별 추진요령 및 절차

1. 추진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이하 “농협제주본부”)
- 사업추진 체계



농가 구입 유형별 보조금 지급 체계

1. (농협 구매) 농가→지역농협→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 증빙서류 불요
2. (일반업체 개별구매) 농가→읍면동→행정시→도→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3. (일반업체 공동구매)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만 인정
농가→공동구매(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주관)→도→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2. 세부절차

① 지원대상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생산자단체 신청 시 구성원 현황 첨부),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③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선택사항, 담당자 확인 가능)
 -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통장사본

일반업체 구매인 경우 ※ 구매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1. (개별) 농가가 일반업체에서 개별 구매한 경우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납품서를 읍면동에 제출
2. (공동) 농가가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해 일반업체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협회가 농가별 공동구매 내역서(농가별 서명 기재 필수), 세금계산서 등을 도에 제출

② 읍면동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인
 - (인증정보) 농가가 제출한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인증정보검색 확인 * 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정보) 공무원 권한용 거출시스템* 확인 * 시스템(<http://korganicboard.com/mng/actionLogout.do>) ※ 아이디, 비밀번호 별도 안내
- 신청내역 제출(엑셀 작성 등)
 - 사업 신청내역 제출(읍면동→행정시): '26. 1. 23.한
 - 지원대상자가 일반업체 개별구매한 경우 농가별 물품구입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읍면동→행정시)
- 대상자 확정사항(지급액 등) 농가 통보(읍면동→농가)

③ 행정시

- 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인증 여부·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확인
- 읍면동 신청내역 검토 후 제출(행정시→도): '26. 1. 28.한
- 지원대상자가 일반업체 개별구매한 경우 농가별 물품구입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행정시→도)
- 대상자 확정사항(지급액 등) 읍면동 통보(행정시→읍면동)

④ 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확정 통보(도→행정시,농협): '26. 2월말
 - 지원대상자 자체 심사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별 구매실적에 따른 지급액 관리 후 통보(도→농협)
 - (농협구매)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정보를 확인 후, 대상자별 지급액을 본부에 통보
 - (일반구매) 대상자별 지급액을 본부에 통보
- 보조금 교부 및 정산(도↔농협제주본부), 추진상황 점검 등

⑤ 농협제주본부,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 (농협제주본부)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 지역농협의 영농자재 구매정보를 본부에서 일괄 작성 후 도 제출(수시)
 -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비용을 반드시 수령(외상 거래 미해당)
-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_공동구매인 경우
 - 공동구매 내역서(농가별 서명 기재 필수), 세금계산서 등 도에 제출
 - ※ 농가별 지급액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

202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정보	주소					
	성명 또는 단체명				단체구성원수	(명)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 정보	인증 농지 소재지(지번)	인증유형 (유기, 무농약)	인증번호	인증기간	대표품목	인증면적 (㎡)

※ 인증유형별(유기, 무농약) 필지 합산 후 금액 산정, ▲공급가액 기준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유기농산물 지원단가			무농약농산물 지원단가		
소규모(정액)	일반(/ha)	목초·이탈리안 그라스(/ha)	소규모(정액)	일반(/ha)	목초·이탈리안 그라스(/ha)
130만원 (0.5ha 이하)	260만원/ha (㎡당 260원)	130만원/ha (㎡당 130원)	104만원 (0.5ha 이하)	208만원/ha (㎡당 208원)	104만원/ha (㎡당 104원)

구입 가능 항목	분야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비고
	농자재	▶ 유기질비료, 퇴비, 친환경방제 등 유기농업자재 ▶ 생분해성 비닐, 녹비종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일반업체 공동구매의 경우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한 경우만 인정
	장비	▶ 해충 포획기, 예초기, 멀칭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45만원 미만의 농작업용 소모성 장비	"
	포장재	▶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공동구매)

제출 서류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단체는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영수증(선택사항, 담당자 확인 가능) 3.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통장사본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불임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체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장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 . .

신청자(단체) : (인)

00읍·면·동장 귀하

<뒷면>

농가 구입 유형별 보조금 지급 체계

1. (농협 구매) 농가→지역농협→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 증빙서류 불요
2. (일반업체 개별구매) 농가→읍면동→행정시→도→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 농가가 일반업체에서 개별 구매한 경우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납품서를 읍면동에 제출
3. (일반업체 공동구매)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만 인정
농가→공동구매 업체(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주관)→도→농협제주본부→농가 지급
※ 농가가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해 일반업체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협회가 공동구매 내역서(농가별 서명 기재 필수), 세금계산서 등 도에 제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신청자가 농축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제출 서식(엑셀 작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00시)】

대 상 자				인증정보					보조금 지급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증유형	인증 번호	지 번	인증 면적 (m ²)	자조금 납부여부	예정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 단체인 경우 인증 농가수 표기(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주소지는 반드시 도로명주소 작성하고, 인증농지는 지번 작성,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확정액 내에서 각종 농자재 등 구입내역 증빙서류 제출 후 지급(농협본부→농가 또는 업체)
- ※ 보조금 지급액은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서식 3) 제출 서식(엑셀 작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농가별 구입내역

【 0 0 읍면동(00시)】

대 상 자		구입내역				비고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구입처	

-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납품서 등 증빙서류 첨부

2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양행석 담당자 이순영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I.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제주 환경에 걸맞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인증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농업 육성 기틀 마련
- 친환경·GAP 인증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기존 친환경농업 유지 및 신규 친환경농업 인증 실천농업인 참여 유도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2026년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548백만원(도비)

나. 세부지원 사업: 3개 사업

- 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③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II .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별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가. 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보조사업 지원 제재 농가, 지방세 체납자

나. ③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 된 자,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농협 등에서 비용을 지원 받은 자, 중복신청자

2. 지원 대상기간: 2025. 12. 1. ~ 2026. 11. 30.

* 대상기간에 포함되어 기간 내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미지급된 경우 또는 '26. 12. 1. 이후에 검사받은 경우 '27년 사업비로 지원

3.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지원단가: 인증(농가)의 품목별 200,000원 이내(잔류농약 검사비 정액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 동일 인증(농가)내역별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검사비 지원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나.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단가: 인증(농가)의 품목별 350,000원 이내(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 동일 인증(농가)의 내역별 인증비 지원을 1회로 제한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친환경 인증비용 단가

신청비(원)	출장비(원)	인증심사관리비(원)	합계
50,000원	인증기관별 기준 적용		350,000원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포함
- 인증심사관리비에 사후관리비(1회 이상) 등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동일(50,000원/인)

다.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단가: 인증(농가)당 180,000원 이내(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농가당 최대 1품목 연 1회 지원
- GAP 인증비용 단가

신청비(원)	출장비(원)	합계(원)
50,000	130,000	180,000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사후관리비(2회)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2,000원/인

Ⅲ. 사업별 추진요령 및 절차

1.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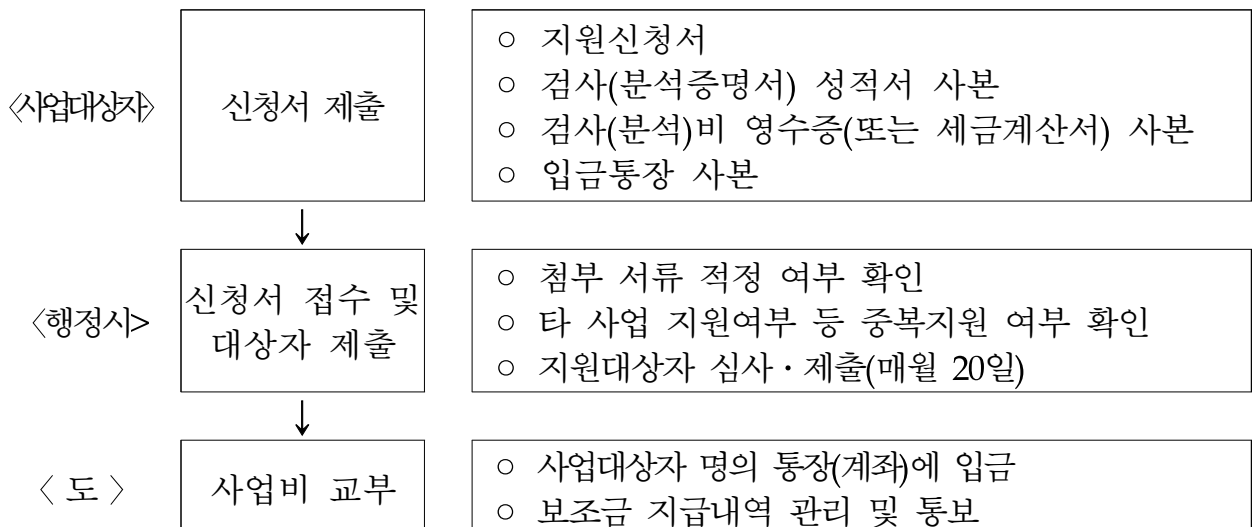
행정시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또는 공무원 권한용 거출시스템 확인
 - * 시스템(<http://korganicboard.com/mng/actionLogout.do>) ※ 아이디, 비밀번호 별도 안내
 - 잔류농약 검사결과 성적서 확인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 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선택사항, 담당자 확인 가능), ⑤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2.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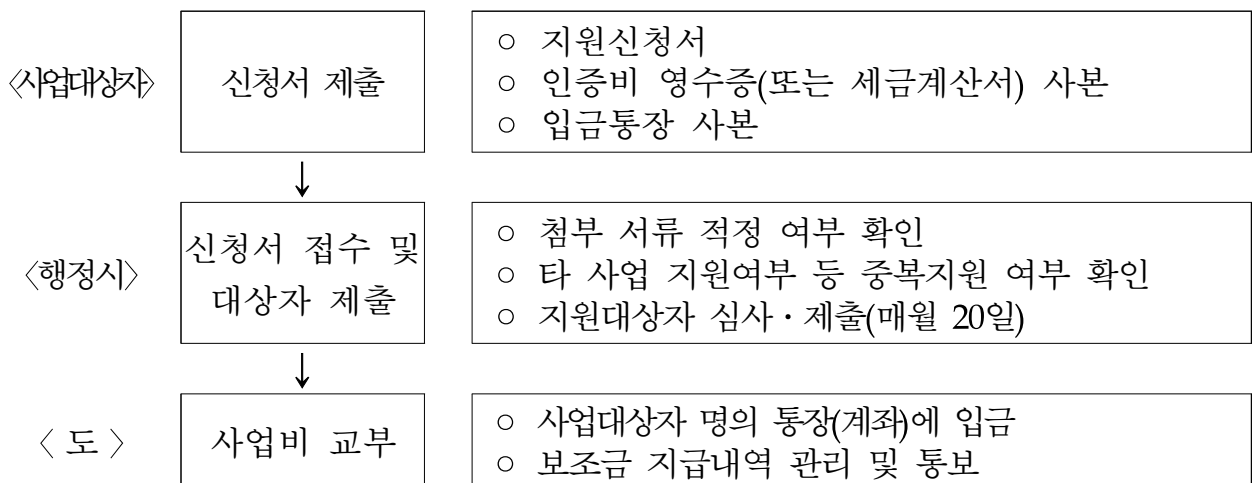
행정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또는 공무원 권한용 거출시스템 확인
 - * 시스템(<http://korganicboard.com/mng/actionLogout.do>) ※ 아이디, 비밀번호 별도 안내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선택사항, 담당자 확인 가능), ④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3.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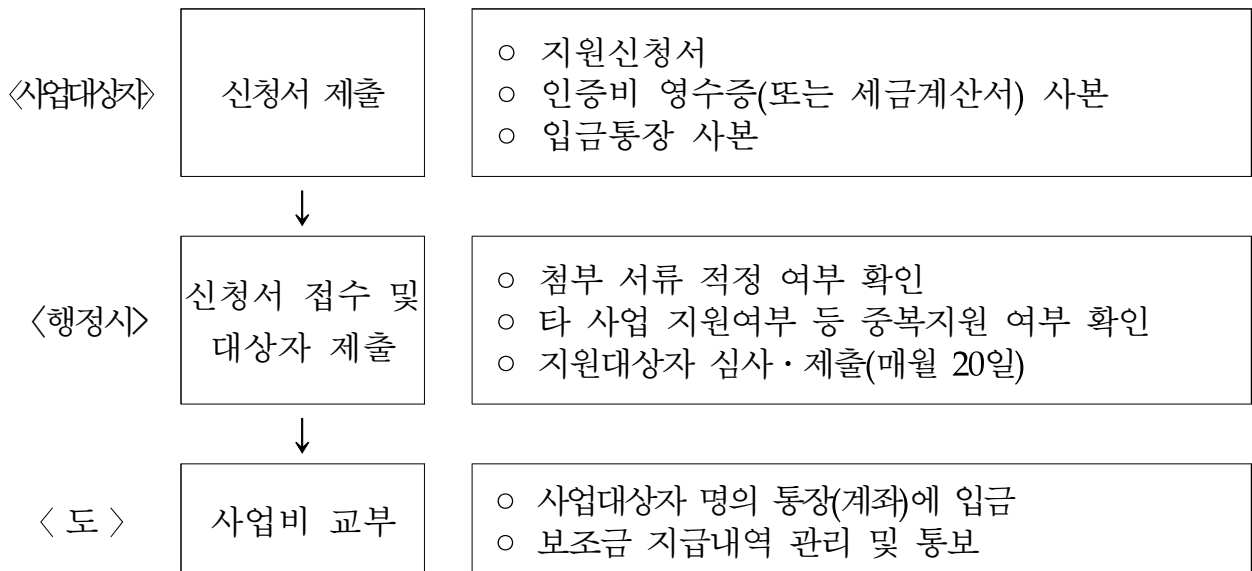
행정시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GAP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http://www.gap.go.kr>)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GAP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	홍OO	1900년 04월 35일 / 남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2										
인증 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 내역		증명서 발급일	검사 기관	분석비용 (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무농약	35-1-123	한라봉	26. 1. 10.	하나인증센터	26. 1. 10.	하나인증센터	180,000	지역농협	123-456-7890	홍OO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p> <p>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p> <p>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p> <p>주 3) GAP인증 안전성검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국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p> <p>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td> <td>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td> <td>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td> </tr> <tr> <td>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td> <td>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td> <td>2026. 1. 1. ~ 2027 2. 28</td> </tr> </table> <p>*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p>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6. 1. 1. ~ 2027 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6. 1. 1. ~ 2027 2. 28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OO읍면동장 귀하																
<p>-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⑤입금통장 사본</p>																

<서식 2>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주00친환경	김00	1900년 1월 10일 / 남 (616-123-456)					064-700-0000	서귀포시 00면 00로 3길 4		
인증 정보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비용(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신청비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합계			
유기	18100000	당근	26.02.01.	둘인증센터	50,000	27,500	272,500	350,000	제주 은행	123-456-7890	김00
무농약	18300000	감자	26.02.01.	둘인증센터	50,000	55,000	245,000	350,000			
GAP	1004000	딸기	26.02.01.	둘인증센터	50,000	130,000	-	180,000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 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6. 1. 1. ~ 2027 2. 28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00읍면동장 귀하											
* 첨부 : ① 인증서 사본, ②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											

<서식 3> (엑셀파일로 작성)

○월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대상자 내역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인증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 발급일자	인증기관	증명서 발급일	검사 기관	분석 비용 (원)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개인	고00	46.01.23.	여	010-0000-20000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3	무농약	한라봉	35-3-588	2025.05.01.	하나 인증센터	2025. 05.01	하나 인증 센터	80,000	80,000	지역 농협	456- 789- 1230	고00
제주OO 친환경	이00	50.11.12. (616-88- 12345)	여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3	유기농	당근	75-1-440 외 4건	2025.05.25.	둘 인증센터	2025. 05.02	셋 인증 센터	180,000	180,000	제주 은행	987- 654- 312	제주OO 친환경 (이00)


<서식 4> (엑셀파일로 작성)

O월분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대상자 내역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인증비용(원)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 월일 (사업자 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인증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 발급일자	인증기관	신청 비	출 장 비	인증 심사 관리비	소계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개인	고OO	46.10.11.	여	010-0000-20000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3	무농약	한라봉	35-3-588	2025.05.02	하나 인증센터	50,000	55,000	245,000	350,000	350,000	지역 농협	456- 789- 1230	고OO
개인	김OO	45.11.11.	남	064-123-4567	서귀포시 OO면 OO로1길 2	GAP	감귤	35-3-123	2025.05.02	하나인 증센터	50,000	130,000		180,000	180,000	지역 농협	123- 456- 7890	김OO
제주OO 친환경	이OO	50.11.12 (616-88-12345)	여	064-700-0000	제주시 OO읍 OO로 1길 3	유기농	당근	75-1-440 외 4건	2025.05.02	둘인증센터	50,000	27,500	272,500	350,000	350,000	제주 은행	987- 654- 312	제주OO 친환경 (이OO)

참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납부 대상자	농가(법인)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서 발급일			
	소재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내역						
대상년도	인증면적(m ²)				고지금액	납부액
	유기		무농약			
	논	밭	논	밭		
년					원	원
<p>상기인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p>※ 문의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 044-863-6202</p>						

※ 본 납부 확인증은 예시용이며, 최종 납부 확인증은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함.

3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064-710-3050
		팀 장 양행석	064-710-3161
		담당자 윤창배	064-710-3163

I. 사업개요

1. 목 적

- 당근, 감자 등 뿌리작물에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해 연작으로 인한 더덩이병 억제 등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2. 추진방향

- 연작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농가 재배 기피 우려되는 당근, 감자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
- 농협계통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4. 2026년 사업계획

- 지원대상 품목: 당근, 감자
※ 대상품목은 사업 추진 중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뿌리작물에 한하여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기간: '26. 3. 1. ~ 10. 31.
- 사 업 량: 45,000포
- 사 업 비: 90,000천원(도비)
- 지원단가: 분상·입상 구분없이 2,000원/포(20kg) 정액지원
- (참고) 2025년 칼슘유황비료 가격: (분상) 4,300원/포, (입상) 7,080원/포
※ 시비량: 200kg(10포)/10a(300평)
- 지원규모: 재배면적 0.1~5ha 범위 내에서 시비량 기준 지원
- 지역농협별 배정현황 (단위: 포)

계	한림	아열	구좌	조천	한경	제주시 동지역	대정	성산	안덕	표선	남원	서귀포 동지역
45,000	420	680	25,190	80	460	50	12300	2,350	1,250	1,900	50	270

※ 지역농협별 배정현황은 도↔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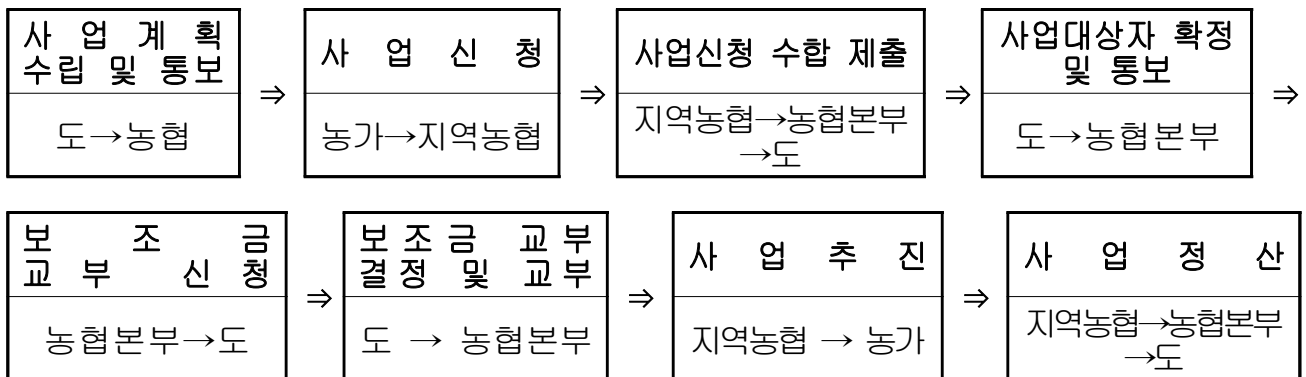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 단,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우선순위: 재배농가 연령 > 영농면적 > 영농경력 순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 단,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초지에 재배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III.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서식1) 통보('26. 1. 23.일 한):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신청자의 연령,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별표1)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보조금심의 후):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방법

구분	역 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비료 공급상황 점검 등 사업 총괄 관리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역농협별 사업 완료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분기별 지역농협별 공급상황 확인 - 사업비 정산 보고 ○ 지역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접수 -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사업완료 확인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보조금 교부: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체자금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IV.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농 협 (지역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협별 공고 및 공고기간 엄수 - 사업신청 및 신청서 수합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농가, 조직체) 및 정산
농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칼슘유황비료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수령확인서) 제출

V. 행정사항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서식 1) 제출(농협본부 → 도): '26. 1. 23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취약계층 유무	<input type="checkbox"/> 여성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농가 농업인			
	성 명 (법 인 명)	()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영농경력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5~10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성별				
신 청 농 지									
순번	재배작물 (예정포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실제 시비면적 (㎡)	분상 입상 구분	수량 (포)	공급 희망농협	공급 희망일자 (월)
1									
2									
3									
4									
5									
6									
7									
총계(00 필지)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면적은 10a~1ha) 주 2)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분상입상 구분은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주 3)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4)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 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 주 5) 취약계층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중 농가주가 여성인 경우(여성단독 농가주) 주 6)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농협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신청자가 농축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

칼솜유항비료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여부	여/부			
	재배작목 (감자, 당근) 여부	여/부			
평가항목	연령	70세 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	40		
		65세~70세 미만(1956. 1. 1.~1960. 12. 31. 이전 출생)	30		
		60세~65세 미만(1961. 1. 1.~1965. 12. 31. 이전 출생)	25		
		60세 미만(1966. 1. 1. 이후 출생)	20		
	영농면적	10,000㎡ 이상	30		
		5,000㎡~10,000㎡ 미만	25		
		5,000㎡ 미만	20		
	영농경력	10년 이상(2015. 12. 31. 이전)	30		
		5년이상 ~ 10년 미만(2016. 1. 1.~2020. 12. 31. 이전)	20		
		5년 미만(2021. 1. 1. 이후)	10		
	총 점		100		
	가점	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	5		
		다문화 농가 농업인	5		

2026.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000

확인자: (소속) (직) (성명) 000

(서식 1) 엑셀작성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대상자 확정내역

【00 농협】

행정시	읍면동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나이 (세)	연 락 처	영농 경력 (년)	신청필지(m ²)				수량 (포)	분상 입상 구분	사업비(원)			공급 농협	취약계층 여부	재배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실제 시비 면적			계	보조	자부담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란에 조직 구성원 수 표기 (구성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취약계층여부는 ‘여성농업인’ 또는 ‘다문화 농가 농업인’ 인 경우 해당사항 기재
- 분상/입상 구분은 ‘분상’ 또는 ‘입상’ 중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서식 2)

칼슘유황비료 수령(공급)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소			

재배작목	신청면적(m ²)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6년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6. . .

인수자(농가):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4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064-710-3050
		팀 장 양행석	064-710-3161
		주무관 윤창배	064-710-3163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실현 및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3. 2026년 사업계획

- 공급기간: '26. 3. 1. ~ 10. 31.
- 사 업 량: 약 300,000포(20kg)
- 사 업 비: 1,20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라 한다)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 보조사업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양액재배, 배지재배 등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업 체 명	상 품 명	공시번호	비 중	규격(kg)
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공시-2-3-254	혼합유기질	20
	유기농특호	공시-2-3-549	혼합유기질	20
	유기농1호	공시-2-3-070	혼합유박	20
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	자농3호	공시3-3-104	혼합유기질	20
	자농1호	공시3-3-040	혼합유기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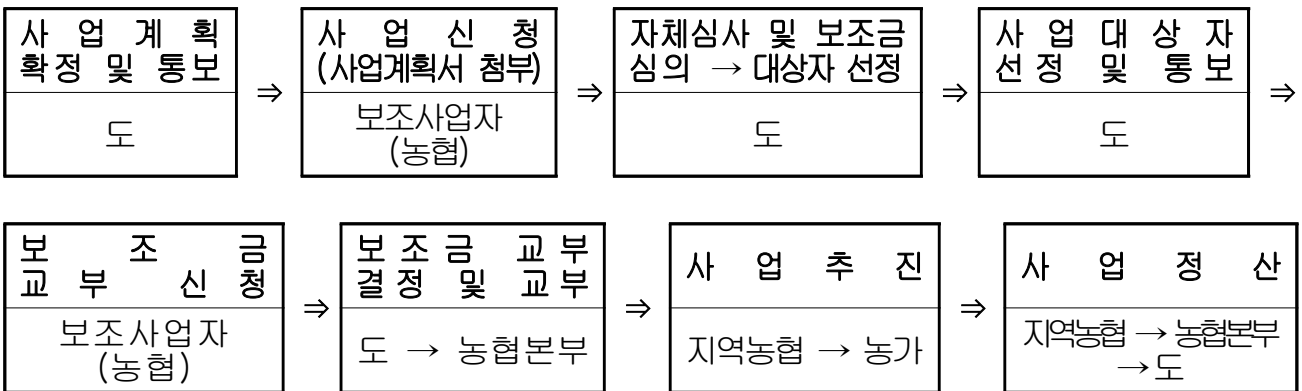
※ 사업 신청일 기준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및 한도액

- 지원기준: 4,000원/포(20kg)
- 지원규모: GAP 인증 면적 0.1~5ha 범위 내에서 지원
 -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14포/0.1ha) 이내 신청 가능
 - 단체(법인) 신청 시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단, 각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① 농업인

- 신청장소: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GAP 인증 농업인(조직체)은 사업 신청서(서식 1) 제출: 단체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지정하여야 함

② 행정시: 신청내역 수합 제출(서식2, 엑셀 작성 / 읍·면·동 → 행정시 → 도)

- 농가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③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농가별 사업 신청 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4)
- 농가별 신청 내역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액 및 부담금 별도 통보(도→농협) 후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 행정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가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농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추진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급 여부 확인 - 농가 부담금을 납입토록 하고 신속히 비료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서식 3) * 500포(20kg 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서는 농가 공급확인서 및 수납으로 확인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지급 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계좌입금 증빙서류, 통장사본)
행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상황 수합 제출 · (읍·면·동→행정시) '26. 1. 23일 한, (행정시→도) '26. 1. 28일 한
농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에 자부담 납부 및 신청 물량 수령 · 지역농협에 공급확인서 제출(서식 3)

○ 사업비 교부: 도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 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부담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 이행점검

-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
- 점검일정: 연 2회(상·하반기)
- 점검항목: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IV.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및 신청서 수합 - 읍면동별 신청 현황 수합 및 관리
농협 (지역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사업완료 후 정산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읍·면·동) 통해 사업 신청 - 지역농협 통해 신청 비료 수령

V. 행정사항

○ 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행정시(읍·면·동)

- 사업지침에 의거 GAP 인증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 접수
- 사업 신청결과 제출(서식 2, 엑셀 작성)
- (읍면동→행정시) '26. 1. 23일 한, (행정시→도) '26. 1. 28일 한

○ 농 협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사업 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역농협에서는 확정 대상자에 대하여 공급 추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사업완료서 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정보	주 소				
	성 명 (조 직 체 명)	()	구성원수 (선택사항)	(명)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인증 정보	인증품목	인증번호	재배면적(m ²)	인증기간	
	계				
사업 신청	제 품 명	비 중	신청물량 (포/20kg)	공급시기 (월)	공급희망 농협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input type="checkbox"/> 혼합유기질 <input type="checkbox"/> 혼합유박 <input type="checkbox"/> 유기복합			
작 요 성 령	1. 인증(조직체)인 경우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지원조건: 4,000원/포(20kg) 3. 도내에서 생산하는 유기 공시된 비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업체명	품목명			
	제주비료(주)	웰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1호			
	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	자농보카시3호, 자농보카시1호			
※ 사업 신청일 기준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서류> 1. GAP 농산물 인증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 비료 배송을 위해 불임의 개인정보를 배송업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2026. . .					
신청자(조직체) :				(인)	
00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신청자가 농축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엑셀작성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내역

【00 읍·면·동】

행정시	읍면동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신청사항		공급 희망 농협	공급 시기 (월)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 일	연락처	인증 품목	인증 번호	인증 면적 (㎡)	인증 기간	상품명	수량 (포)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서식 3)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령(공급)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소			

재배작목	신청면적(m ²)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6년 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6.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5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064-710-3050
		팀 장 양행석	064-710-3161
		담당자 윤창배	064-710-3163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온성미생물(GCM) 자재(유기농업자재) 공급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업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생산성 증대

※ 사업시행 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2. 추진방향

- 고온성미생물(GCM) 공급 희망 농업인 중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 의지가 있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추진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 및 GAP 인증 면적에 대해 사업물량 배정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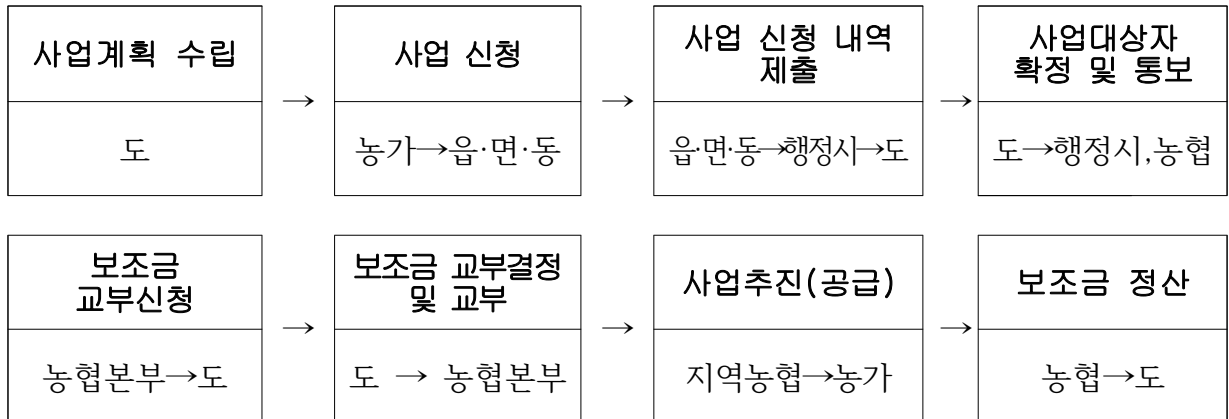
3. 세부 추진계획

- 공급기간: '26. 3. 1. ~ 5. 30.
- 대 상 자: 고온성미생물(GCM)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1,000,000천원(정액)
- 사 업 량: 47,059세트 * 1세트= 미생물 2봉(미생물제 500g, 미생물배지 500g)
- 지원내용: 농가당 신청수량에 따른 고온성(GCM) 미생물 제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경작면적 1,650㎡당 20세트 지원 * 82.5㎡당 1세트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200세트
 - 지원단가: 21,250원/세트(2봉) * 1포당 예상가격: 42,500원의 50%수준 지원

II. 사업 추진요령

1. 사업추진 절차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추진절차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행정시, 농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 내역 수합 제출('26. 1. 23일 까지)
농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식4, 5) · 농가공급(확인서 징구)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잔여 물량 발생 시 추가 선정 요청(7.10일 한) ·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에게 신속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서식3) 징구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
농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을 통한 자부담분 입금 및 자재 수령

2. 사업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부증명서, 친환경인증서(해당농가), GAP 인증서(해당농가)
- 인증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제출 필수

3. 농가별 사업량 배정기준

- 친환경(유기·무농약) 인증 면적 및 GAP 인증면적 신청물량 우선배정
- 1순위 친환경 인증 면적, 2순위 GAP 인증 면적, 3순위 일반 재배면적
- 우선배정(친환경·GAP) 후 남은 물량은 일반 재배면적만 보유한 농가를 포함하여, 각 농가의 미배정 신청량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 배정 예시 >

A농가: 친환경 6,600㎡, GAP 3,300㎡, 일반 4,125㎡, 신청 170세트

1순위(친환경): $6,600/82.5 = 80$ 세트

2순위(GAP): $3,300/82.5 = 40$ 세트

3순위(일반): $4,125/82.5 = 50$ 세트

⇒ 우선배정 120세트 미배정 물량 50세트

※ 우선배정(친환경·GAP)으로 120세트를 먼저 배정하고 일반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나머지 신청분(50세트)에 대해서는 타 일반 재배면적 농가와 함께 비율 배분

4. 공급포기에 따른 대상자 추가선정 및 공급

- 공급기간(~'26.5.30일) 종료 후 '26.6.30일까지 농가 포기 의향을 파악하고 포기 물량에 대해 추가 선정 요청(농협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26.7.10일 한
- 포기 신청장소: 공급희망 농협
- 구비서류: 사업 포기서(서식6)
- 추진절차: 지역농협 → 농업인(선정통보) → 지역농협(포기서 제출) → 농협 제주지역본부(사업 포기에 따른 매입 취소분 반환) → 농협 제주지역본부(추가 선정 요청) → 도(포기 물량에 대한 추가 선정) → 농협 제주지역본부(추가 선정 통보) → 지역농협(고온성 미생물 추가 배정) → 농업인(추가 선정자 수령)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신청자가 농축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온성미생물(GCM) 자재 공급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소			

재배작목	신청면적(m ²)	수량물량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26년 GCM 미생물자재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6.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고온성미생물(GCM) 공급 포기서

성명		연락처	
주소			

재배작목	신청수량	포기수량	공급 농협명
계			

「2026년 고온성미생물(GCM) 지원사업」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포기서 제출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6

화훼생산능가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과 장 김상엽	064-710-3170
		팀 장 이창륜	064-710-3141
		담당자 김지윤	064-710-3143

I.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침체, 물류비 상승 등 화훼 농가의 농업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화훼 산업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의 농가소득 안정 도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II. 2026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화훼 생산 농업법인, 농업인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
 -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2. 사업비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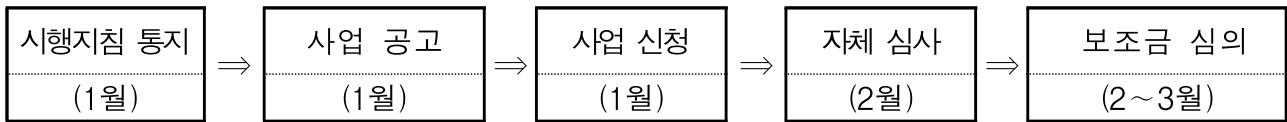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량 : 32,140상자(매)
- 사업비 : 112,500천원(보조 90,000, 자부담 22,500)
- 사업단가 : 상자당 3,500원 이내(보조 2,800원, 자부담 700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상자당 지원 예시)

- ▶ 상자당 4,000원인 경우 보조 2,800원, 자부담 1,200원임
- ▶ 상자당 3,000원인 경우 보조 2,400원, 자부담 600원임

- 지원내용 :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사업비(량) 배분기준(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분기준)
 - 전년도 출하 물량(상자 수), '26년 신청상자 수를 참조하여 배분

Ⅲ.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2026. 1월 중(별도 공고한 기간)
-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 제출 서류 】

< 공통 사항 >

-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②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농업인일 경우 대표)
- ⑤ 출하(수출 포함)실적(2025년)

< 농업법인 >

- ① 단체소개서(법인) ② 구성원 현황(법인)
-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1년이상 재무제표(법인)
- ⑤ 회의록(법인)
- ⑥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5인 이상) 각 1부
- ⑦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26. 2월[출하실적 및 출하계획 등으로 심사]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26. 2~3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6. 3월

IV. 사업집행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 할 경우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V.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도 식품산업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산업과)
또는, 사업대상자 → 도 (식품산업과)
- 도(식품산업과)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구성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구 분	품목명	출하본수 (천본)	상자수 (개)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내 수							
수 출							

상기와 같이 2026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체크)

2026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첨부 : 사업지침의 제출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사업명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업내용 :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개

화훼재배현황

품목명	재배면적(노지+시설) (m ²)	출하분수(내수+수출) (천본)	조수입 (천원)	비고
예시: 백합				2025년

사업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 출하실적 및 계획

연도	품목	출하처(수출국)	출하분수(천본)	출하상자수(개)	비고
2025 실적	계				
	내수				
	수출				
2026 계획	계				
	내수				
	수출				

기대 효과

- 화훼농가 경영안정 도모

7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과 장 김상엽 팀 장 김현철 담당자 박구슬	064-710-3170 064-710-3181 064-710-3184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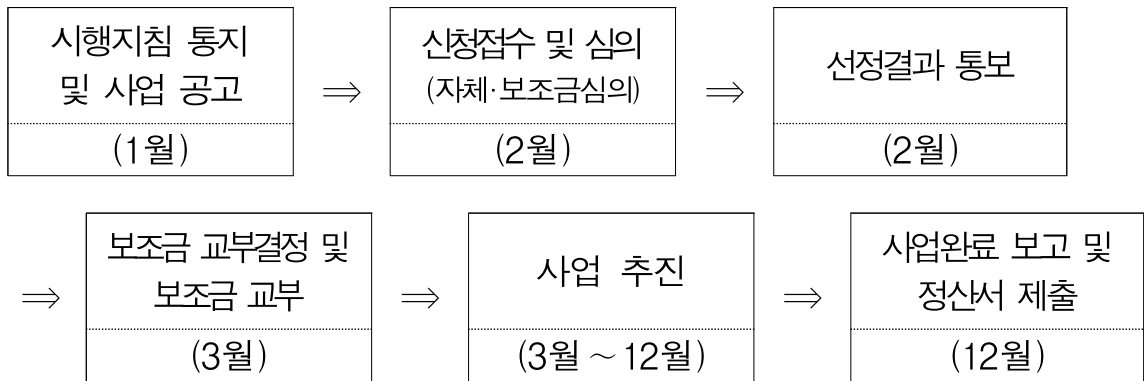
- 시설 쌈채소류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조절 차원의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 사업량 : 45톤
- 사업비 : 18,000천원(정액)
- 지원대상 : 시설 쌈채소류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 지원단가 : 360원/kg(제주→김포 항공물류비 기준)
- 지원내용 : 시설 쌈채소류를 도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단체소속 농가 대상으로 항공 출하 물류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최근 시설 쌈채소류 생산량 및 출하물량 등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Ⅲ. 세부 추진절차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신청서(통합서식 1~4) 및 관련 서류*를 식품산업과로 제출
-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연간 시설 싹채소류 출하내역서 등

○ 대상자 선정

- 신청 단체의 시설 싹채소류 출하물량,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식품산업과)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추진
 -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추진 내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미리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출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승인
-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보조금 관련 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정산서 제출

* 항공 출하 계약서, 출하 실적확인(증명)서, 출하 농가별 보조금 입금 내역, 운송비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기타운송내역 등),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보조 사업비 정산(도 식품산업과)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 서류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등 정산 검사

IV. 행정사항

○ 도(도 식품산업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 완료 후 정산 검사

○ 행정시(읍·면·동)

- 시설 찜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협조

○ 보조사업자(사업 신청자)

- 신청기간 내 통합서식(1~4)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시설 सम्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구 분	심사지표	배 점	심사결과
단체규모 (2 0 점)	○ 생산자단체 회원의 규모 - 회원 수 100명 이상(20점) - 회원 수 100명 미만 50명 이상(10점) - 회원 수 50명 미만(5점)	20	
생 산 량 (3 0 점)	○ 생산자단체 회원의 연간 총생산량 - 300톤 이상(30점) - 300톤 미만 200톤 이상(15점) - 200톤 미만(10점)	30	
출하 실적 (3 0 점)	○ 최근 연간 도외 출하 물량 - 45톤 이상(30점) - 45톤 미만 30톤 이상(15점) - 30톤 미만(10점)	30	
기 타 (2 0 점)	○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보조금 지원 내역 - 신규 신청(20점) - 동일 사업 1~2회(10점) - 동일 사업 3회 이상(5점)	20	
총 계		100	

8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지원사업에 대한 도 부서 및 사업추진부서

지원사업명	도 부서	사업추진부서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710-3151)	•제주시 감귤유통과 (☎728-3351~3)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760-2711~3) •읍면동주민센터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710-3141)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710-318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감귤유통과 농산물유통팀 (☎710-3271)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식품산업과 원예진흥팀 (☎710-3181)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710-3141)	

I.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 시대,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 창업농·후계농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 농정 적극 추진

II.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III.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 인증농가, 다문화 농가, 청년 창업농·후계농, 일반농가

□ 지원사업: 6개사업

- ①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사업
- ②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③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⑤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 ⑥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 **예산배분** (당해연도 1농가당 1개 사업으로 제한)

지원순위	대 상	예산배분	비 고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예산액의 75%	10% 범위내에서 그룹별 예산 배분 조정 가능
2그룹	일반농가	예산액의 25%	

※ 사업별 신청자가 예산액 대비 적을 경우 행정시 자율로 과목해소 후 사업추진

※ 그룹 내에서 일반밭작물(채소, 특작, 화훼, 식량작물)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과수 지원 가능

(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일 경우 타 저온저장고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정의 》

① 소농: 경지면적 0.5ha(5,000㎡) 이하(과수 포함)

※ 경지면적이라함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의 실제 경작면적 (재배면적=실제 관리 농지면적)으로 함

② 고령농: 65세 이상(1962.12.31.이전 출생자)

③ 여성농: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 여성농업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연간 90일 이상 영농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

④ 귀농인: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준용

※ 2022.1.1.이후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⑤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⑥ 다문화농가: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 및 혼인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가족

⑦ 청년창업농·후계농: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으로 선발된 지 5년 이내인 자

⑧ 일반농가: 심사기준표에 의함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 재배 행위 적발 농가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GAP 인증 농가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 소득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을 지원받은 자
 - ※ 단, ①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의 경우 타 기종은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 가능
 - ②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인 경우 3년 이내 1ha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 가능
 - ③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의 경우는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 가능
-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중복 지원 불가

IV.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밭작물(채소·화훼·특용·식량작물) 재배 농업인
 -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재배 면적(경지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감귤류를 포함한 과수류 제외)
- 사업 신청인 및 대상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단, 동일 농업경영체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 단, ①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② 친환경, GAP 인증농가인 경우 인증서(친환경농산물, GAP)로 대체 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 단, 친환경, GAP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 ※ 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발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대상자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 ※ 단, 단순 변심,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는 제외

V.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1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발작물 재배농지
 -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면적 200㎡, 깊이 1m 이내(사업량 200㎡)
 - ※ 사업비 산출기초는 1m를 기준으로 한다.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7,000천원(보조 4,200천원, 보조율 60%)
 - ※ ㎡당 단가: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신청 경작지 현장 확인
 - 읍면동장은 농경지 암반제거 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신청 필지별로 반드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암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완료 시 암반제거 절성토량*을 확정(측량)한 후 산출 내역에 따라 중기 사용료 및 조달청 고시 인부임을 적용하여 사업비 확정
 - 증빙자료(업체 견적서, 산출내역서, 설계내역 포함 등) 첨부

- ※ 농지개량 행위(성토·절토) 신고 의무화(농지법 개정, '24.1.2.)에 따라 사업 시행 전 농지개량 신고 이행
(농지개량 미신고·거짓신고 시 농지 원상회복, 공사중지 등 조치 명령)
- ※ 현장 확인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확인대장”에 기록 유지

②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1기종 1대(농기계 1대 최소 사업비 500천원)

〈 기종 선정 기준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지원(부속기 포함 지원 하되, 신청자 소유 농기계 부속기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속기인 경우 면세유 대장 추가 제출
-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농가의 선호도 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과 실무부서가 협의하여 지원결정(단, 파쇄기, 동력운반기 등 과수농기계, 농업용 드론 제외)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7,00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6,000천원, 보조율 60%)

③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밭작물 재배농가중 개별 육묘장 시설 희망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165㎡ 범위내 * 165㎡ 초과 시 자부담 추가해 설치 가능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9,702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3,860천원/개소(보조한도 8,316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 지원단가 : 84,000원/㎡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
-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이와 관련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육묘장 시설 시공이 가능한 자

※ 단,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도 가능 함.

〈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 기준 〉

- ‘농가 자가시공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건설 자재대 범위내에서 지원
 - * 인부임 지급영수증 별도 제출
- 농가 자가 시공 지원 기준(사업비 단가)
 - (165㎡ 기준) 자재대 11,137천원, 인건비 2,723천원 범위내
 - (㎡ 당) 자재대 67,496원, 인건비 16,504원 범위내
- ※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발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16.5㎡이하 * 16.5㎡ 초과 시 자부담 추가해 설치 가능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2,127천원, 보조율 70%)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9,24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건축물(시설): 17,325천원/개소(보조 10,395천원, 보조율 60%)
농기계(장비): 13,200천원/개소(보조 7,920천원, 보조율 60%)
- 지원단가: (시설) 1,050천원/㎡, (장비) 800천원/㎡
- 건축물(시설)기준: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 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 조절(냉열가습) 장치를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기준: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 저장기계 지원 기준량(16.5㎡ 이하)이내에서 수량 제한

○ 사업시행 등

- 공사시행자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 건축 인·허가 대상 건축물(신규·증축 등)인 경우 사전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후 사업 추진
-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함
- 건축물 용도분류 상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함
- 저장고 판넬,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 ※ 사업완료 후 신축 (건축물) 저온저장고는 건물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가설건축물 불인정) 및 부기등기 의무화
- 사업 완료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등기 및 부기등기된 건축물 등기부등본 첨부 제출

- 농기계(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⑤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밭작물(채소·화훼·특용·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단, 하우스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는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밭작물 재배 등록된 소재지에 한함

- 총사업비: 하우스시설(82,500천원) + 빗물처리시설(물탱크)

- 지원기준량(농가당): 1,000㎡ ~ 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1그룹) 82,500천원/개소(보조한도 57,75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82,500천원/개소(보조한도 49,500천원, 보조율 60%)

· 빗물처리시설(물탱크)

- (1그룹) 50톤: 28,600천원/개소(보조한도 20,020천원, 보조율 70%)
100톤: 41,200천원/개소(보조한도 28,84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50톤: 28,600천원/개소(보조한도 17,160천원, 보조율 60%)
100톤: 41,200천원/개소(보조한도 24,720천원, 보조율 60%)

※ ① 빗물처리시설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붙임 시방서 준용)

② 도급(시공)업체 선정기준

- 하우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빗물처리시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

○ 지원단가

- 하우스시설: 50천원/m²
- 물탱크시설: 50톤 28,600천원(기본 27,600천원+침투조 1,000천원)
100톤 41,200천원(기본 40,200천원+침투조 1,000천원)

○ 시설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감귤하우스
(08-감귤-1형) 표준시방서 준용

- 채소·화훼 무가온 파이프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 기초, 골조(하우스 철재, 부속 자재), 관수, 피복, 개폐기 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 비닐하우스 시설 후, 10년 이내 감귤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외 됨을 보조조건에 명시 및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준용
 - * 1억 이하인 경우, 2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다만, 전자입찰을 통한 가격 결정)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제외 여부: 농지법 관련 검토 반드시 필요

⑥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급수원 확보가능한 지역의 밭작물 재배농가
 -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0.1ha(1,000㎡)이상~1ha(10,000㎡)이하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스프링클러
 - (1그룹) 3,750천원/개소(보조 2,625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750천원/개소(보조 2,250천원, 보조율 60%)
 - ※ ㎡ 당 단가: 375원 이하
 - A형(1단, 4m 간격): 375원, B형(2단, 8m 간격): 328원
 - ※ A, B형: 산출내역 및 표준 설계도 참고
 - 분사호스
 - (1그룹) 3,750천원/개소(보조 2,625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750천원/개소(보조 2,250천원, 보조율 60%)
 - ※ ㎡ 당 단가: 1.2m 간격 375원
 - ※ 분사호스 산출내역 및 표준설계도 참고
- 지원항목: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관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구입하고, 자재 구입 완료 검수 후 지급
 - ※ 검수 시 자재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및 납품일자·수량의 일치 여부 등 확인

Ⅵ. 사후관리

□ 추진배경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교부조건 미이행 여부 및 해당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사후관리

□ 관련 근거

- (중요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7조
- (중요재산 처분 제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
-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
- (지방보조금의 반환, 환수)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 제34조

□ 점검 개요

- (사후점검) 연 1회
- (점검대상)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 (대상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 (점검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
- (점검내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 여부 등

< 사후관리기간 >

-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5년
-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사업, 소규모 채소·하우스 시설 지원: 10년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건축물(시설) 10년, 농기계(장비) 5년
-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1년

□ 행정사항

(도 본청)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행정시 사후관리 점검 결과 보고사항 확인

< 사업별 도 담당부서 >

-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농업기반팀)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식품산업과(원예진흥팀)
-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식품산업과(원예진흥팀)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식품산업과(농산특작팀)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감귤유통과(농산물유통팀)

(행정시)

- 행정시 자체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추진
 - * 행정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시에서 현장 점검
- 사후관리 점검결과 보고(행정시→도)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행정시→도)

(읍·면·동)

- 필요시 읍·면·동 단위 자체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현지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 등 보고(읍·면·동→행정시)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실시

VII.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25.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25. 12월말) - 행정시(세부계획 수립) →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26.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농가 → 읍면동('26. 1월초)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 행정시('26. 1월중)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읍·면·동 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예산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 → 읍·면·동('26. 2월말)
↓		
사업대상자 확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26. 3월)
↓		
보조금 교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 대상농가('26. 3월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읍·면·동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		
사후관리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및 위반 시 조치 등

2. 사업시행 지침 시달

- 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별지 서식)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을 행정시 시달('25. 12월말)
- 행정시는 도에서 시달된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사업농가 선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통보('26. 1월초)
- 읍면동은 행정시에서 교부받은 세부계획(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에 대하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26. 1월초)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6. 1. 2.(금) ~ 1. 16.(월)
-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단,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의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신청
- 제출서류

사업명	공통 서류	분야별 서류	비고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① 사업신청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상세내역포함) 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④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⑤ 별도 증빙자료 (대상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 감찰인 위임장) 또는 토지 대장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5년 이상) 	※ 단 임차농인 경우 농지대장 으로 임차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형 농기계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 면세유 관리대장 (부속기를 구매하는 경우) • 공급기관 형식승인서 또는 품질인증서 (신규 농기계인 경우) 	
소규모 육묘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① 토지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 ②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인 경우 - 건축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임차건물인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이상)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 	
발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임차농일 경우 농지대장 추가 제출 	

- ※ 별도 증빙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단, 과수제외 발작물에 한 함), 교육수료증, 자조금가입확인서 등
-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단,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의 경우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26. 1. 26.(예정)
- 심사평가 기준
 - 평가항목: 경지면적(과수류 포함 면적), 고령농(1그룹에 한함), 계통출하실적, 6개사업 수혜실적(부부합산), 농업관련 교육 이수
 - 가점항목: 인증(GAP, 친환경), 보험(재해, 풍수해), 취약농가, 월동채소 재배면적신고, 우량농지*, 자조금** 가입, 토양생태 환경보전
 - * 우량농지인 경우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해당 필지에 한함
 - ** 자조금 품목은 감귤포함 과수류 제외
- 심사(평가)기관: 행정시장 (※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장)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평가)기관: 행정시장 (※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장)
 - 평가자: 업무담당자, 확인자: 업무담당
- 우선순위 선정
 - 사업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1순위 사업 신청 농가는 해당 사업 우선 선정

5.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25. 2월
- 행정시는 시 또는 읍면동별 자체심사(심사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심의 상정하고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
 - ※ 읍면동담당자는 사업대상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통한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할것

6. 예산 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행정시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에 의해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 재배정('26. 2월말)

7.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읍면동장은 행정시에서 확정 통보된 예산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농가 및 행정시에 통보

※ 다음의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예비명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
 ①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확정순위에 근거하여 포기물량 및 잔여 예산에 대해 추가 대상자 선정하거나, 예산 전배 조치(그룹간, 읍면동간)

8. 사업 추진, 사업 완료 및 정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 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물품(장비)	
이 ○○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 임. 2026년 월 일 농가(단체)명:	
장비명(규격)	
사후관리	2026. 0. 0 ~ 2031. 0. 0.

-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및 단단한 스티커 등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보조사업의 수행(사업신청,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물품 (기계·장비류 등) 구입: 사업완료 보고서
 - 공사: 사업착수보고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사업이 완료되면 도급업체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계좌이체한 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을 도급업체로 계좌이체한 후 이체내역을 첨부(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한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근저당권 설정) 제공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처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의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만료일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을 위해 아래와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농경지 암반제거 사업 확인대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지소유총면적	전 기타	m ² , 답 m ²	m ² , 과수원	m ² ,
신청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암반제거 신청량	m ³	
	주요재배작물				
사업예정기간					사업추진 우선순위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margin-top: 100px;">사 진</div>					

중기 임대차 계약서

장비 임대인과 장비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중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임차목적 : 농경지 암반제거
2. 임차금액 :
3. 계약작업장 위치, 장비 및 작업물량

작업장 위치			작업 계약		계약 금액	작업장비
리	지 번	지 적	면 적	물량		
		m ²	m ²	m ³	천원	굴삭기

4. 작업내용 : 지상 및 지하 1m 내외 분포한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
5. 임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날짜에 일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 작업을 못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작업 중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7. 임차료는 작업 완료시 임차료 청구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불한다.
8.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장비임대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인)

장비임차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위 입 장

토지소재지 : 제주시 읍(면) 리동 번지 (지목 :)

면 적 : m²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인바, 금번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토지에 매몰 및 돌출된 암반을 제거하는데 대하여 모든 행위 및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수임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읍.면.동에 등록된 인감 날인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보조사업자인 경우 사후관리카드와 합철 관리하고, 채권자는 담보 물건 서류와 합철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보조금교부서류와 합철 관리한다.

□ 합의의 목적

- 재산(사업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 합의사항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코자 함.

□ 재산의 표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m ²)	권리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사항

-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000 0000 지원사업으로 상기 지번 상에 시설 및 장비가 설치 됨을 동의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된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 및 매각, 임대, 교환, 압류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만일, 재산의 권리자가 상기 재산(토지) 및 보조금 지원된 재산을 처분 함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유지 및 운영이 곤란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되어 보조금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재산의 권리자는 보조사업 관련 재산을 매각한 대금의 범위내에서 당 사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보조금 회수 결정금액)를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행정기관(보조사업 시행기관)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기준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165m²)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합 계				(십원이하 반올림)		13,860,000
골 조 공 사	독 립 기 초	1종	개	40	3,200	128,000
	근 가	1m×0.2m×0.16m	개	30	16,000	480,000
	주 기 등	∅60.5×3.65t×7m	본	16	80,000	1,280,000
	마 구 리 기 등	∅60.5×3.65t×4.6m	본	8	35,000	280,000
	주 서 가 래	∅48.1×2.1t×6m	본	16	35,000	560,000
	곡 부 보	□50×50×2.0t×6m	본	10	53,000	530,000
	지붕가로대(중앙)	∅33.5×2.1t×6m	본	5	21,000	105,000
	지붕, 측면가로대	∅26.7×1.9t×6m	본	36	17,500	630,000
	측면가로대(하단)	∅33.5×2.1t×6m	본	10	21,000	210,000
	기타가로대(종합)	∅26.7×1.9t×6m	본	50	15,000	750,000
	중 방	∅48.1×2.1t×5.5m	본	14	30,000	420,000
	기 등 브 레 싱	∅48.1×2.1t×7m	본	4	35,000	140,000
	개 폐 축	∅21.2×1.9t×6m	본	20	9,500	190,000
	중 합 물 흡 L 자	∅48.1×2.1t×1.8m	본	32	7,000	224,000
	중 합 물 흡 부 착 식	∅48.1×2.1t×1.8m	본	3	18,000	54,000
	기 타 자 재	55종	식	1	3,900,000	3,900,000
	부 가 가 치 세	10%				포함
	소 계					
피 복 사	비 닐	0.12mm×310cm×30m	롤	1	125,000	12,5000
	방 충 망	4×6×100	롤	1	270,000	270,000
	기 타 자 재	10종	식	1	860,848	860,848
	부 가 가 치 세	10%				포함
	소 계					
인 건 비	인 건 비	작업반장	명	3	182,544	547,632
	인 건 비	특수인부	명	12	181,293	2,175,516
	소 계					2,723,148
조건 : 1. 하우스시설 165m ² 는 5.5m×30m×1개소 기준 2. 시설기준 및 시방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 7. 24)] 적용 ※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 적용						

<붙임 2>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 시방서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 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비교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비고
정 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정의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시험방법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①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 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②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①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 ²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 ² 를 초과하지 않으며, ② 10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등이 없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자재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시멘트판, 섬유/석고/압출시멘트판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 텍스 등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c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깔 다음에 15cm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Δt , 증발 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Δt 5°C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 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C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Δt 7~10°C, 증발온도는 -10~-15°C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Delta t_m = 8.41^\circ\text{C}$ 기준
-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Δt 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Δt , 증발기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터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터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붙임 3>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연계사업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빗물이용(물탱크)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업개요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 및 개발로 인한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 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우수 활용시설과 우수 유출을 병행하여 규정한다

라. 사업목적 : 본 설계는 강우 중의 우수를 여과, 살균함으로써 우수한 처리수질과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중수(농업용수 등 잡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내용 일체

가.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서 의미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에 시공한다.

1.3 적용방법

가.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나.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각 시방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며, 화재, 도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사장에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고 또한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상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공사관리 지침 및 안전보건 관리 지침에 따른다.

1.5 시공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공기준에 따라 제반 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 및 시공도

- 1)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먼저 승인을 받은 도면이라도 시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변경을 요구 할 시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라.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행하고,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검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6 청소 및 관리

가. 저장조는 내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사다리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나. 내부청소에 관한사항 및 기기류의 운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발주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방법과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다. 내부청소 시 저장조 바닥면 물을 일시에 모두 뺄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1.7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가. 시운전 완료 시점을 공사 완성으로 한다.

나. 인수인계

공사완성 후 장치의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 하는 시기라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기에 인계인수가 가능하다.

1.8 하자보증기간

종합시운전 완료 후에도 3년 이내의 하자사항은, 소모품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2.1 공사 범위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나. 빗물이용시설 (저장소, 여과장치)일체

2.2 기 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40215 지장물 철거"에 의거,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3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4 터파기 및 기초설치(농가 선택시공 시)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기초공사를 시행한다.

나.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다.
-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침투조 설치

- 터파기 시 구조체를 설치했을 때 월류관 방향으로 과원 사정에 맞게 침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등으로 되메우기 한다.

마. 구조체의 하중을 고려하여 지반다짐 및 잡석지정을 하며 기초는 버림콘크리트와 기초용 철근콘크리트로 분리하여 타설한다.

바.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을 배근한 후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고정된 후 타설하여야 하고 공사 중 불필요한 시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5 구조체시공

가. 구조체의 형태가 원형이나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부위별로 거푸집을 제작한 후 견고하게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타설 시 철근조립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스페이서를 단단히 조인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체는 저수조이므로 물의 침투나 세어나가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면에 방수를 해야 한다.

- 방수시공 전 콘크리트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곰보, 균열부위는 보수한 후 시공한다.
- 접착에 방해가 되는 진액,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은 제거 후 시공한다.
- 방수층 시공 후 위에서 작업 시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 방수층의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참고)

여과시설 및 안내문 등의 설치 기준

1. 빗물이용시설의 여과시설 설치 기준

- 여과시설의 크기는 가로 1.5미터 × 세로 1미터 × 높이 1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집수된 빗물이 저류조로 유입될 때 이물질의 침전 및 여과처리를 위해 3단 이상의 정류판을 설치하고, 정류판 사이에 자갈 등의 여과재를 적절히 충전하여 이물질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류판은 내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바닥면에는 약 Ø40mm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평상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외곽 주변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콘크리트로 완경사 처리하여야 한다.
- 덮개는 여과시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청소 등을 위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 등의 안내문 설치기준

빗물 이용시설(집수정) 안내문			
저류시설 용량	톤	빗물용도	하우스 농업용수
집수가능 면적	(하우스면적) m ²	이용계획량	m ³ /월
준공일자	2026년 월 일	관리자(전화)	홍길동 010-0000-000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집수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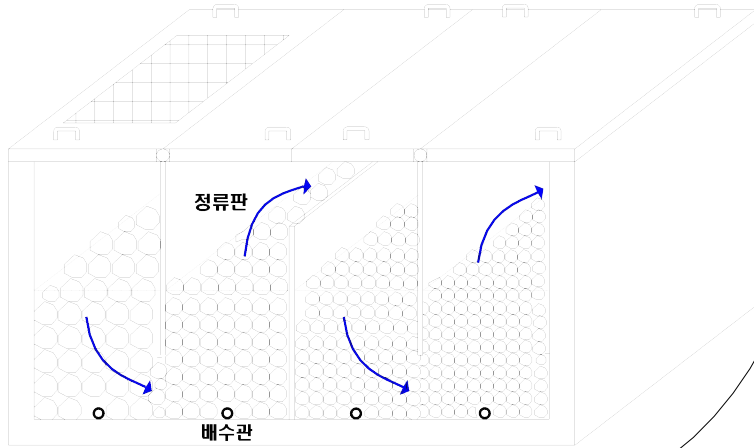
※ 안내문은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크기의 내부식성이 있고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설치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연계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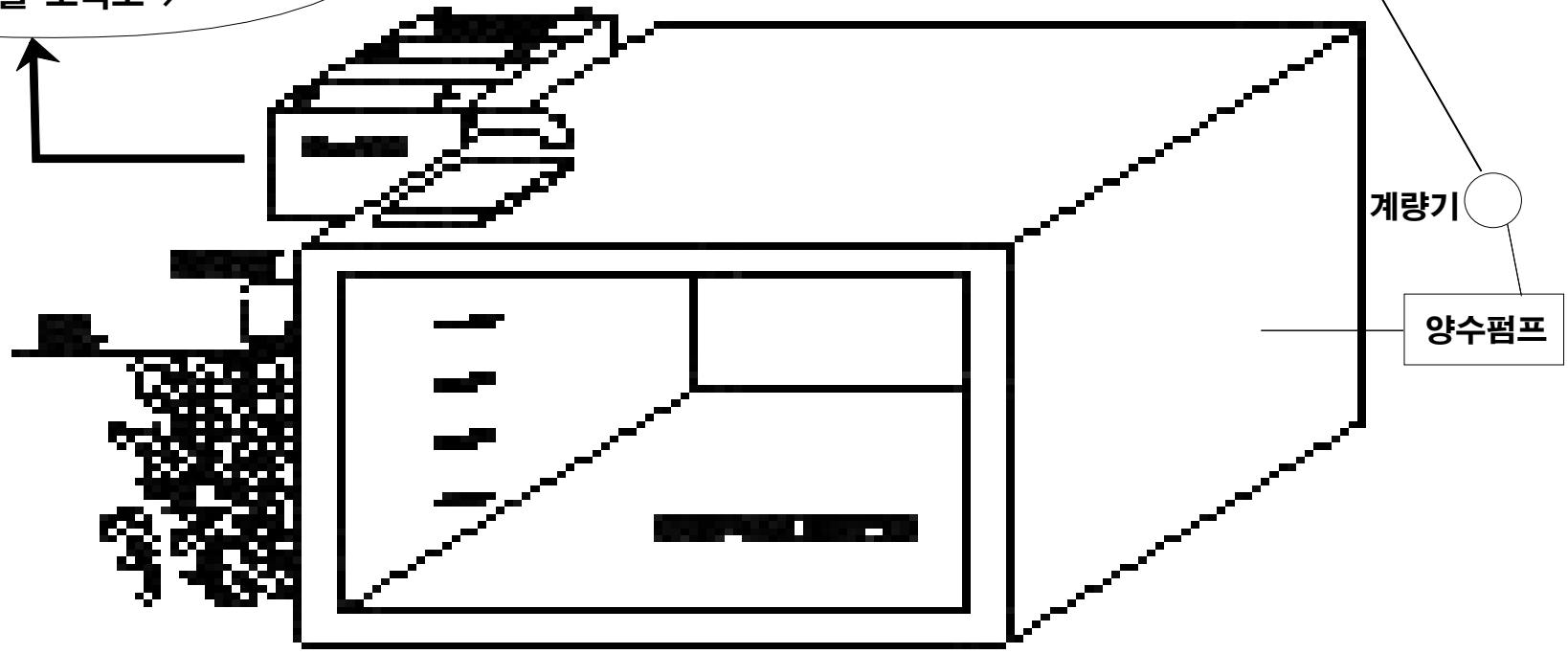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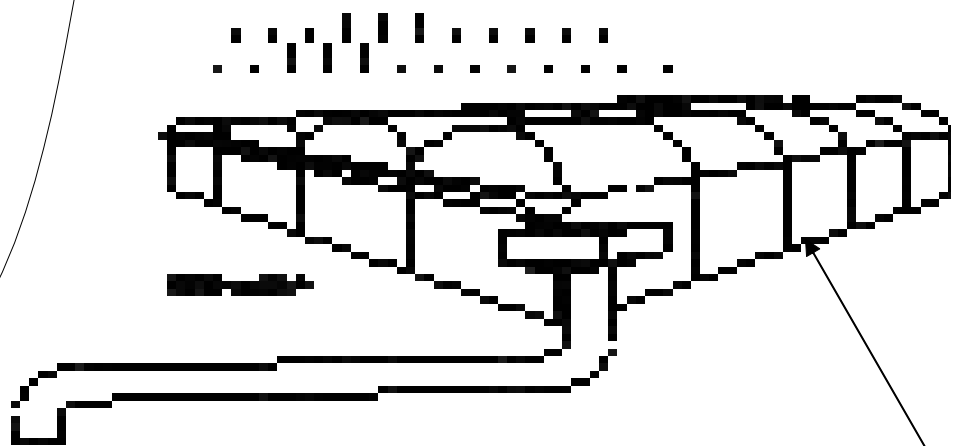
빗물이용시설(물탱크) 모식도 및 설계도

2026년

※ 50㎡, 100㎡ 모식도와 설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사업에서 인용하여 작성된 설계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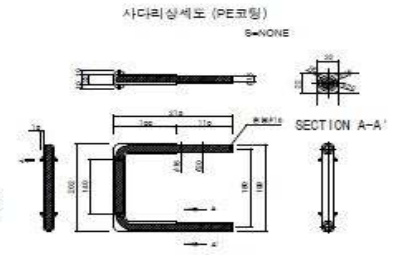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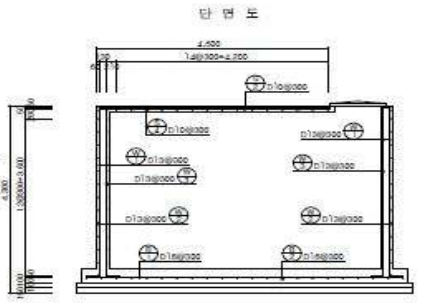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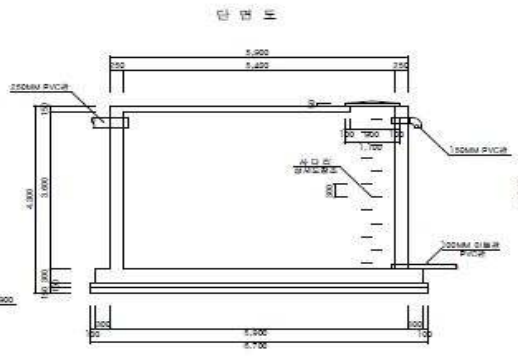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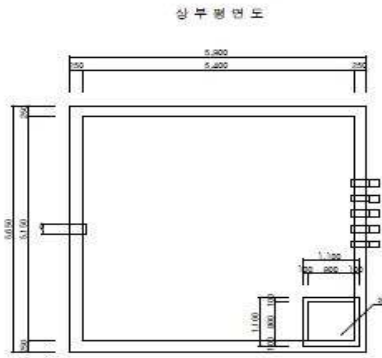


< 여과시설 모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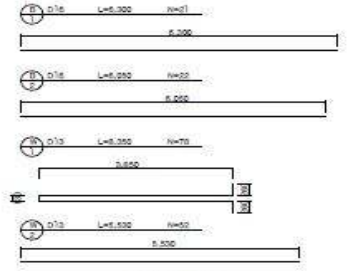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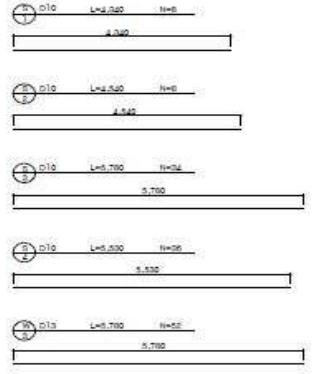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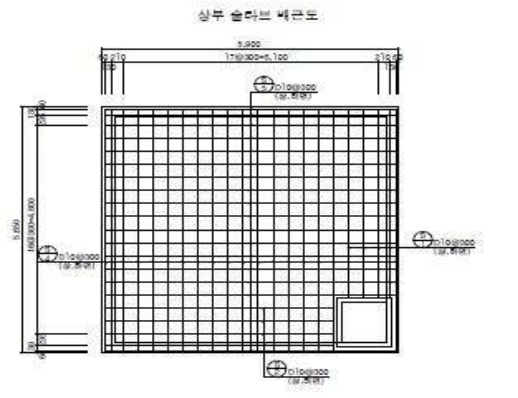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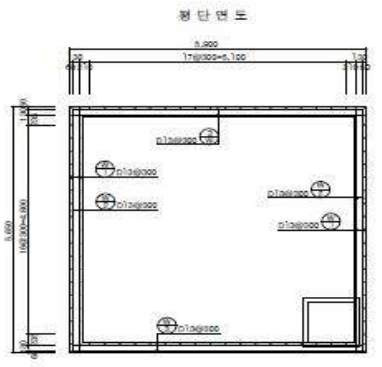
빛물 이용 시설 (저류조) 100 m³

SCALE = 1 : 100



재료표

구분	구	과	단위	수량	비고
사다리			EA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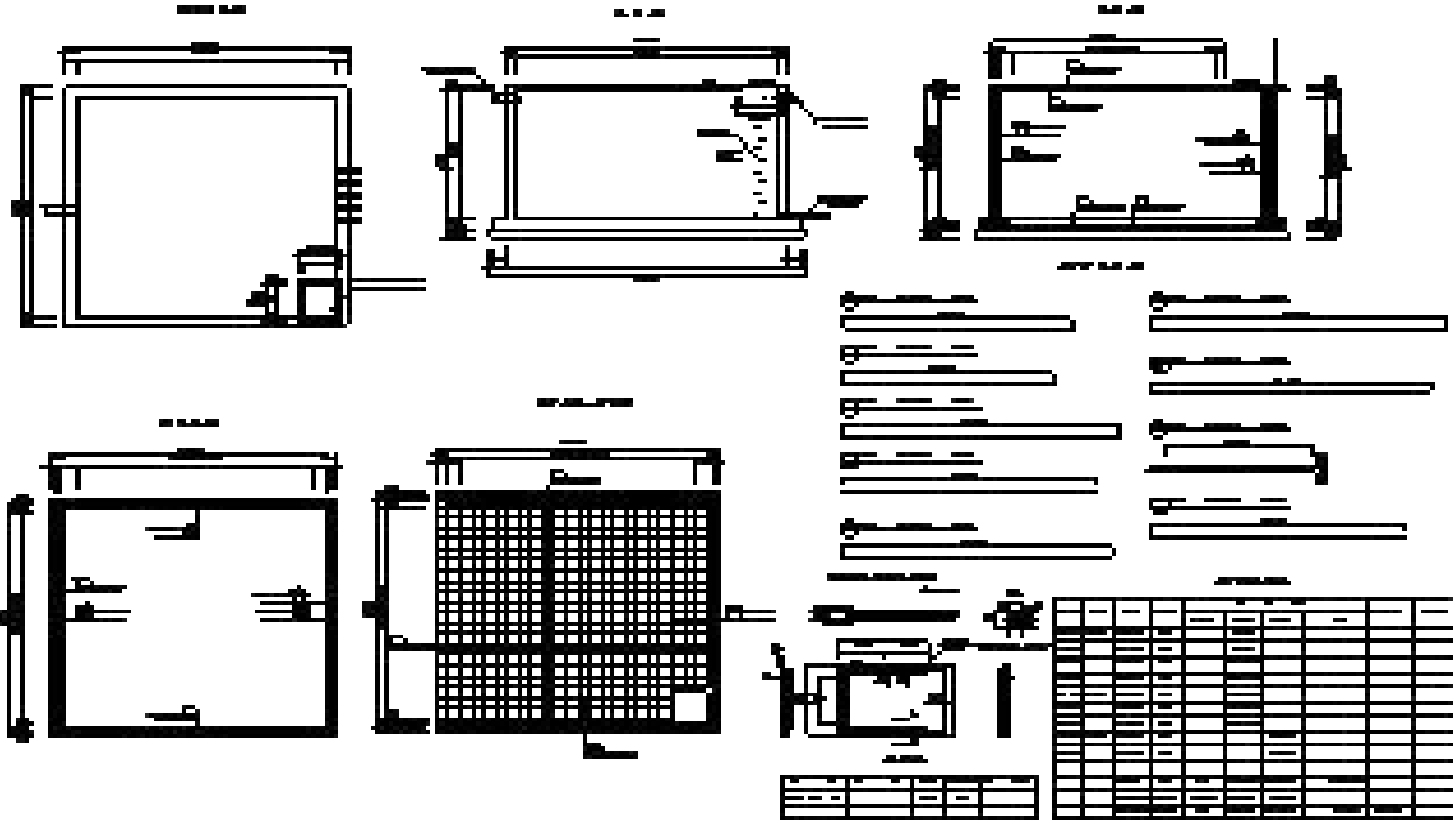


철근재료표

번호	직경	길이	개수	중량			비고	비율	비고
				D10	D13	D18			
S 1	D10	4,240	6	34.72					
S 2	4,240	6	24.32						
S 3	5,700	54	194.52						
S 4	5,200	36	189.20						
W 1	D10	4,200	78	667.30					
W 2	5,200	52	297.56						
W 3	5,700	52	300.56						
B 1	D18	5,200	21		132.20				
B 2	6,000	22			132.70				
계	m			256.64	1,233.42	289.40		1,879.46	
단위중량	kg/m			0.250	0.985	1.680			
총중량	TON			0.207	1,233	0.474		1,920	

맞춤형 공사실 [A]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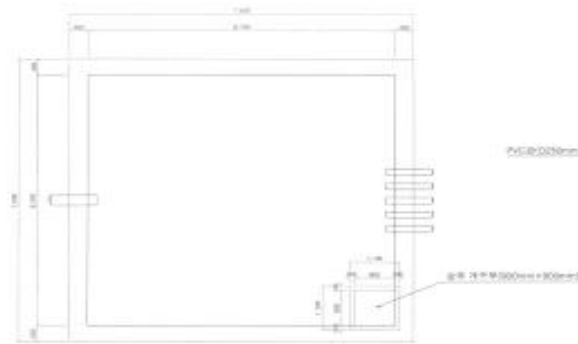
1200mm x 1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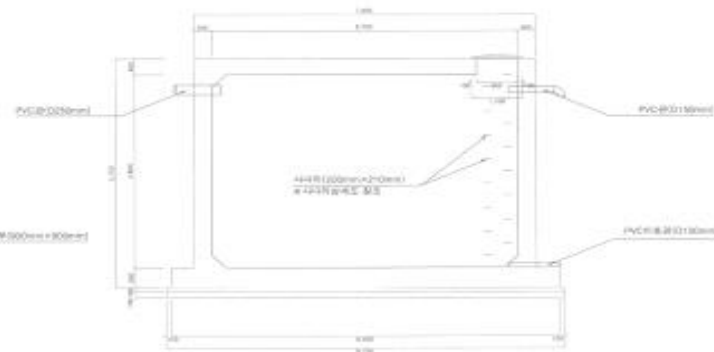
빗물 이용시설 일반도(1)

[저류조 200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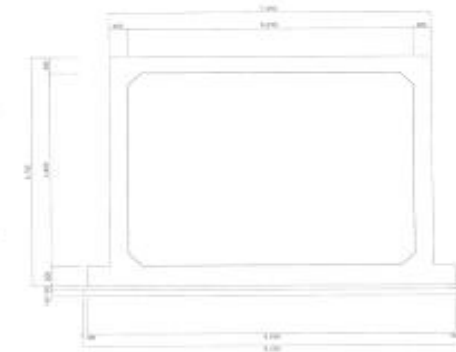
평면도



측면도 <1>



측면도 <2>



사다리 상세도



한국농어촌공사	부 시	제주지역본부	지 구							건설분야	도목	도면명	빗물이용시설 일반도(1)
	사업단계	세부설계	공 구							도면속성	A3 - 1:100		
	작성일자	2023.01.10	작성인	이정민	검核인	김영민	승인인	김영민	승인일	2023.01.10	도면번호	1-3-1	

【별지 제8호 서식】

(제8-1호 서식) 경작지암반제거사업 사후관리 점검표

**친서민 농정시책 사후관리 점검표
(경작지암반제거사업)**

사업년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비	금 원(지방비 , 자담)		
사업장위치			
착공일		준공일	
확인결과			
조치사항			
【현장 사진】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제8-2호 서식)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및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표

친서민 농정시책 사후관리 점검표 (사업명)

- 보조사업자 :
- 사업장위치 :
- 보조사업내용 :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 지원사업 평가표에 의해 사업대상자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는가?	·	
· 보조받은 시설물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	
· 시설이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록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20 . .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제8-5호 서식)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사후관리 점검결과

친서민 농정시책 사후관리 점검결과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관서명	지원연도	보조사업자	농지소재지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합계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제8-6호 서식)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외의 사업 사후관리 점검결과

친서민 농정시책 사후관리 점검결과 (사업명)

관서명	지원연도	보조사업자	농지소재지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안내문 미부착	목적외 사용	소유권 이전	
합계								